

용인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

제정 2021. 1. 8 규칙 제1024호
일부개정 2023. 4. 27 규칙 제1104호(제명개정)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용인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」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23. 4. 27>

제2조(신청서) 「용인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」 제6조제1항에 따라 학교복합시설을 사용(변경을 포함한다)하고자 하는 자가 시장에게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 제출하는 신청서의 서식은 별지 서식과 같다. <개정 2023. 4. 27>

부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23. 4. 27 규칙 제1104호>

이 규칙은 공포 후 15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지 서식] <개정 2023. 4. 27>

<앞 면>

시설 사용(변경) 신청서					
신청인	성명 (법인·단체명과 대표자명)			생년월일 (법인등록번호)	
	주소			전화번호	
사용 구분		사용 신청		변경 신청	
사용시설명				* 변경의 경우에만 기재	
사용목적				* 변경의 경우에만 기재	
사용인원				* 변경의 경우에만 기재	
사용기간		년 월 일 시부터	년 월 일 시까지	년 월 일 시부터	년 월 일 시까지
사용시설 및 부속설비		기본시설		기본시설	
		부속설비		부속설비	
사 용 료					
변경사유		※ 변경의 경우에 기재			
「용인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」 제6조제1항에 따라 시설 사용(변경)을 신청합니다. 년 월 일 신청인 (인) (법인·단체는 그 대표자 명)					
용인시장 귀하					
구비서류		신청인(대표자) 제출서류			수수료
		1. 사용(사업)계획서 1부 2. 그 밖에 필요한 서류 1부			없 음

210mm×297mm[일반용지 60g/m²(재활용품)]

※ 사용기간은 시간까지 정확하게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.

